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7
----------	-----

제출년월일 : 2008. 7. .

제 출 자 : 속 초 시 장

1. 개정취지

- 그 동안 설악동 집단시설지구(B·C)에 대하여 강원도 및 속초시에 은행대출금에 대한 주민들의 이차보전 지원 건의가 있었으며,
- 설악동 관광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주민자구책으로 부채경감에 한계가 있기에 특별 이차보전을 시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안 제2조)

- 1) “융자금”을 “융자금(기존 대출융자금 포함)”으로 개정
- 2) 이차보전금의 재원을 “시비”에서 “시비(외부지원금)”으로 개정

나. 별표 (속초시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건 및 한도) 개정 (안 제3조)

- 1) 지원대상기업중 특별지원대상을 신설
: 설악산국립공원지역(설악동)내 중소기업
- 2) 융자한도중 특별지원대상을 신설 : 5억원 이내
가) 융자일 현재 이차보전 지원되고 있는 금액을 포함하고,
도비 등 외부 지원이 있는 경우 10억원까지 융자 및 이차
보전 지원이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1)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나. 예산조치 : 예산부서 협의 완료

다.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 2) 입법예고 (2008. 4. 23 ~ 5. 15) 결과, 접수 의견 : 별첨
- 3) 입법예고 이후, 규정의 구체화·명확화를 위한 자구 삽입
 - 부칙중 “이차보전” → “특별지원 이차보전”
 - 별표 이차보전기간중 “용자일로부터 2년간” → “용자일로부터 2년간 (단, 특별지원대상은 지원일로부터 2년간)”
- 4) 설악동 집단시설지구(B·C)내 숙박·상가업체 이차보전계획 (강원도 지침) : 별첨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시비”를 “시비(외부지원금 포함)”으로 한다.

제2조제2호중 “융자금”을 “융자금(기존 대출융자금 포함)”으로 하고, 동조 제3호중 “시비”를 “시비(외부지원금 포함)”으로 한다.

제3조중 “[별표]”를 “별표”로 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특별지원대상 이차보전은 2008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지원한다.

[별표]

속초시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건 및 한도
(제3조 관련)

구 분	내 용
지원대상기업	1. 우선 지원대상(제조업중) 가. 수출상품 생산업체 나.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라.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 효과가 큰 업체 2. 특별 지원대상 가. 설악산국립공원지역(설악동)내 중소기업 3. 기타 지원대상 가. 지역경제와 밀접한 중소유통업체 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용 도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용 자 한 도	1. 우선 지원대상(제조업) : 3억원 이내 가. 연간 매출액 범위 내 (결산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납세증명 참조) 나. 연간 매출액이 8억원 이상인 업체는 초과 매출액의 25% 이내 추가 가능 2. 특별 지원대상 : 5억원 이내 (융자일 현재 이차보전 지원되고 있는 금액을 포함하고, 도비 등 외부지원이 있는 경우, 10억원까지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가능) 가. 기존 은행융자액 범위 안(은행 대출잔액 확인서 등 참조) 나. 신규 은행융자액 범위 안 (은행 대출계약서 등 참조) 3. 기타 지원대상(비제조업) : 7천만원 이내 가. 연간 매출액 범위 내 (결산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납세증명 참조) 나.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상인 업체는 초과 매출액의 25%이내 추가 가능
지 원 조 건	1. 금리 : 은행 일반 대출 금리중 5% 이내를 이차보전 2. 이차보전기간 : 융자일로부터 2년간 (단, 특별 지원대상은 지원일로부터 2년간) ※ 기간연장 : 1년만 연장가능 (단, 특별 지원대상은 제외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융자금을 알선하고 그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u>시비</u>로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시비(외부지원금 포함)</u>----- -----.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2. <u>속초시중소기업육성자금</u>(이하 “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중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각종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기관이 속초시와의 협정에 의하여 속초시에서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출하는 <u>융자금</u>을 말한다. 3. 이차보전금이라 함은 제2호에 의하여 시중은행에서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속초시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u>시비</u>로 보전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 ----- <u>융자금(기존 대출융자금 포함)</u>을 말한다. 3.----- ----- -----<u>시비</u> <u>(외부지원금 포함)</u>----- -----.
제3조(자금·이차보전금의 지원대상등) 자금 및 이차보전금의 지원대상업체·지원용도·융자한도 및 지원조건 등은 <u>[별표]</u>와 같다.	제3조(융자금·이차보전금의 지원대상등)----- ----- -----<u>별표</u>와 같다.

[개 정 전]

[별 표]

속초시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건 및 한도
(제3조관련)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기	관내 중소기업체 가. 우선 지원대상(제조업종) ① 수출상품 생산업체 ②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③ 농공단지 입주업체 ④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 효과가 큰 업체 나. 기타 지원대상 ① 지역경제와 밀접한 중소기업체 ②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용 도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융자한도	○ 우선 지원대상(제조업) : 3억원 이내 가. 연간 매출액 범위 내 (결산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납세증명 참조) 나. 연간 매출액이 8억원 이상인 업체는 초과 매출액의 25% 이내 추가 가능 ○ 기타 지원대상(비제조업) : 7천만원 이내 가. 연간 매출액 범위 내 (결산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납세증명 참조) 나.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상인 업체는 초과 매출액의 25%이내 추가 가능
지원조건	○ 금리 : 은행 일반 대출 금리중 5% 이내를 이차보전 ○ 이차보전기간 : 융자일로부터 2년간 ※ 기간연장 : 1년만 연장가능

[개 정 후]

[별 표]

속초시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건 및 한도
(제3조 관련)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기	1. 우선 지원대상(제조업종) 가. 수출상품 생산업체 나.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라.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 효과가 큰 업체 2. 특별 지원대상 가. 설악산국립공원지역(설악동)내 중소기업 3. 기타 지원대상 가. 지역경제와 밀접한 중소기업체 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용 도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융자한도	1. 우선 지원대상(제조업) : 3억원 이내 가. 연간 매출액 범위 내 (결산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납세증명 참조) 나. 연간 매출액이 8억원 이상인 업체는 초과 매출액의 25% 이내 추가 가능 2. 특별 지원대상 : 5억원 이내 (융자일 현재 이차보전 지원되고 있는 금액을 포함하고 도비 등 외부지원이 있는 경우 10억원까지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가능) 가. 기존 은행융자금 범위 안 (은행 대출잔액 확인서 등 참조) 나. 신규 은행융자금 범위 안 (은행 대출계약서 등 참조) 3. 기타 지원대상(비제조업) : 7천만원 이내 가. 연간 매출액 범위 내 (결산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납세증명 참조) 나. 연간매출액이 2억원 이상인 업체는 초과 매출액의 25%이내 추가 가능
지원조건	1. 금리 : 은행 일반 대출 금리중 5% 이내를 이차보전 2. 이차보전기간 : 융자일로부터 2년간 (단, 특별 지원대상은 지원일로부터 2년간) ※ 기간연장 : 1년만 연장가능 (단, 특별 지원대상을 제외한다.)

- 입법예고 기간중 -

의견접수 및 검토결과

◇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제 출 의 건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관 광 과	제안이유 : 융자한도 및 대상 조정 ◇ 융자한도중 신규 은행융자액에 대한 지원부분 삭제	◇ 조례의 목적 등의 검토결과 의견 미반영	미반영
설악동 246 조경식	◇ 조례 개정 환영 ◇ 전 주민대상 실질적인 조사 우선 ◇ 임대업주에게도 이차보전 시행 ◇ 설악동 주민외 외자인 이차보전 제외 ◇ 재산 취득한 사항은 이차보전 제외 ◇ 입법예고사항 설악동지역에 현수막 게시 ◇ 이차보전 시행에 있어 소수 의견이 아닌 전 주민 공감대 형성 필요 ◇ 이차보전 신고 양식을 주민에게 배부, 자율신고로 형평성 제고 ◇ 설악동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사, 지원 필요	◇ 본 조례는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로, 임대주 및 폐업주의 지원은 조례 및 강원도 이차보전계획의 지원 대상자 범위와 배치되며, 이를 개정할 경우 본 조례의 법적 안정성 지해 ◇ 제2금융권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안과는 별개의 문제임	미반영
강창식 외 10명	◇ 본 조례안에 따라 시행될 경우, 자영업자(23명)에게만 적용되어 임대주 및 폐업주와 제2금융권 채무자(37명)들은 제외 ◇ 임대주 및 폐업주, 제2금융권 대출자들이 자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 요구 ◇ 폐업자는 신규 허가후 지원 ◇ 임대인은 임차인과 공동사업자로 등록후 지원 ◇ 소급 적용이 아닌 시행후 2년간 지원	◇ 현재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으며 다만, 타지역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금은 지역자본의 타지역 유출 등 지역경제규모, 활성화 시책과 배치됨으로 인해 검토 필요 ◇ 조례안은 신규 은행융자액에 대해서도 지원규정을 두고 있음. 다만, 지원기간에 있어 강원도 이차보전계획에 따른 한시적인 지원으로 인해 지원기간 변경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임	

雪嶽洞 集團施設地區(B・C) 內

宿泊・商家業體 利差補填計劃



雪嶽洞 集團施設地區(B・C) 內 宿泊・商家業體 利差補填計劃

- 설악동집단지설지구 재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설악동재개발추진위원회" 등으로부터 숙박·상가업체에 대한 이차경감대책 건의에 대하여
- 현재, 주민 자구책만으로는 부채경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고, 지난 '75년 정부주도의 집단 정비사업 등을 감안하여 특별 이차보전책을 추진코자 함

1. 그간 "이차보전" 주민건의사항

- 2007.3. 2 : 설악동 주민대표와의 간담회 (도 + 속초시)
- 2007.4.24 : 행정부지사와 면담 * 은행대출금 상환대책(3~5%) 요망 등
- 2007.8.23 : 탄원서 송부(도, 도의회, 청와대, 환경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先매입 後개발(B・C지구), 이차보전 요구 : 3~5%
- 2007.9.19 : 도지사 설악동 주민대표 면담(속초시청)
* 설악동재정비추진위원회위원장 외 4인, 시장, 도의원 등

2. 부채현황 및 운영실태

- 부채현황 : 약 200억원 추정 (B·C지구 숙박·상가시설)
 - 이 자 액 : 연간 약 16억원
 - 평균이자율 : 년 7~8%대 (개인별 신용도에 따라 차이)
 - 대출은행 : 속초시 관내 금융기관
 - * 농협 대출액 74억원(일반자금대출) 등
- 운영실태
 - 총 244개 업소 중 174개 업소(71.3%)가 휴·폐업 상태
 - 경매로 헐값에 매각되는 업소 속출 ('06년~ : 26개 업체)
 - ⇒ 탐방객의 급격한 감소, 상경기 쇠락 등 황폐화·공동화 가속

3. 이차보전 필요성 검토

- ① '75년 정부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최초 집단이주 → 정부정책 적극 호응
 - 설악산 진입로 주변 불량민박·상점 난립으로 주변환경 일제 정비
 - 당시 정부주도로 221세대(大·小건물 984동, 부지면적 3만평)를 현위치로 이주
 - ※ 전국 관광지 개발사업을 촉진하는 결과 초래(경주 보문, 제주도 중문단 등)

- ② 설악동 재정비사업 지연으로 정부불신 팽배
 - 당초 설악동 이주에 따른 기대감 상실 (D·E·F지구 후속 미개발)
 - 강원도 재정비(안)이 환경부와 협의지연 등으로 주민생계 곤란
 - ※ 설악동 재정비사업은 "참여정부 관광정책 18대 과제" 포함
- ③ 각종 개발규제로 시설투자 곤란 및 해외로의 관광 급증
 - 자연공원법 등 개발규제로 투자여건 열악 및 재산권 행사 제약
 - 설악동지역 상경기 쇠락으로 황폐화·공동화 및 지역경제 침체 가속

◀ 종합 검토의견 ▶

- 당초, 설악동 주민들은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집단이주 하였으나, 정부에서 약속한 D, E·F지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개발사업이 아직 미 착수되어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여 왔고
- 그 동안 각종 개발규제 등으로 인한 시설투자 곤란 등 정부와 외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부채(이자)가 발생되었고, 현재 주민자구책만으로는 부채경감에 한계가 있어 지역주민 생존권 보호차원의 특별 이차보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 현재의 정책자금 지원조례로 이차보전 곤란(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4. 이차보전계획

- 지원대상자 범위
 - 현재 설악동 집단시설지구(B·C) 내에서 일반숙박업, 상가 업체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자 (* 단, 폐업자, 신용불량자 등 제외)
- 지원대상자금
 - 실제 사업체 운영에 따른 경영자금, 시설투자 및 개선자금, 가게 및 경영에 직접 사용한 자금
 - ※ 기타 부동산 매입자금(설악동외 지역), 사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부채기준일 : '07. 9. 19 이전 (주민대표와 도지사 면담일 기준)
- 지원내용
 - 이차보전율 : 4%
(개인별 고정·변동금리와 관계없이 잔여이자 및 연체이자는 주민부담)
 - 소요예산액 : 년 8억원 예상(총 대출예산액 200억원의 이차보전 4%)
 - 비용분담 : 도 50%(4억원), 속초시 50%(4억원)
 - 지원기간 : '08. 1. 1 ~ '09. 12. 31 (2년)

- 대상자 선정·지원 방법
 - 업체별 부채실태 일제조사 : 도+속초시(설악동재개발추진위, 은행 협조)
 - 개인별 은행대출액 조사, 주민 현지면담조사 등
 -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이차보전심사위원회」에서 세부 지원방안 결정
 - 최종적으로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후 확정 (개인별 지원액 등)
 - 속초시에 자금교부 후 시에서 대출은행에 직접 납부

5. 향후 추진계획

< 道 >

- '07.10.12 까지 : 이차보전계획 통보 (도 → 속초시)
- '07.11.25 까지 : 대상자 선정, 지원액 규모 등 확정
- '07.11.30 까지 : 「도정조정위원회」상정·심의 결정
 - 안전상정 : 이차보전 필요성, 선정기준, 개인별 지원액 등
- '07.12.10 까지 : 개인별 이차보전액 등 최종 확정

< 束草市 >

- '07.10.20 까지 : 이차보전 자체세부추진계획 수립제출(속초시→도)
 - 시비부담액 확보, 부채실태조사,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기준 등
- '07.11.10 까지 : 부채실태조사 (설악동재개발추진위, 대출은행 협조)
 - 업체별로 대출은행, 대출액, 대출용도, 이자율, 신용불량자 등
 -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 업체별(개인별) 면담 및 현지실사
- '07.11.20 까지 :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이차보전심사위원회」 개최
 - 기능 :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 및 이차보전액 심사·확정
 - 구성 : 10명 내외(시, 의원, 대출기관별 대표, 설악동 주민대표 등)
 - * 위원장 : 속초부시장
- '07.11.25 까지 : 「이차보전 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제출(시→도)
 - 개인별 이차보전액, 금융기관별 부채현황 및 이차보전책 등
- '07.12.31 까지 : '08년 시비부담 소요예산 확보 : 4억원(당초예산)
- '08년(분기별) : 자금교부 신청 및 이차보전액 은행 납부, 정산

< 설악동 재개발 추진위원회 >

- 개인별 부채 현지실태조사 협조 지원

참 고 사 항

- 이차보전 흐름도 -

